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1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취지 및 검토	4
1) 제정안의 취지	4
2) 제정안에 대한 검토	5
2. 제정안의 구성	7
3. 조문별 검토	8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8
2) 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11
3)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조)	13
4) 전문연구기관(안 제6조)	14
5) 신고 접수 및 조치(안 제7조 및 제8조)	15
6) 실종성인 등록 제한 등(안 제9조 및 제10조)	16
7) 실종성인 발견활동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18
8)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안 제13조) ..	20
9)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안 제14조)	22
10) 출입·조사 등(안 제15조)	25

11)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26
12)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29
13) 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 및 신고인에 대한 통지(안 제22조 및 제23조)	32
14) 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안 제24조)	33
15) 관계기관의 협조 등(안 제25조)	34
16) 벌칙 및 과태료(안 제26조 및 제27조)	3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임호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09. 09.
3. 회부연월일 : 2024. 0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연 7만여 건 내외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인원은 발견 및 복귀되고 있으나, 이 중 상당한 수의 사건들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실종성인에 대한 개념 및 발견을 위한 각종의 실질적인 조치 등 법적 근거·권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인바, 실종성인 본래의 내용으로의 사건 접수나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의 조치가 불가하여 자살기도 등의 이유를 빌어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실무상 수색영장 등의 청구를 통한 수사작용에 의존하게 되는 형편으로 발견이 매우 지연되고 있는 등 근본적인 원인에 봉착하여 실종성인의 발견·복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실종성인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발견활동을 위한 조사와 개인위치정보·이동경로정보 조회 등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권한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신속발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성인”, “특정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및 “신상정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실종성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 수립·추진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며,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마.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탐문 조사, 주변인물 진술 청취, 정보 조회 및 장비 활용 수색을 할 수 있고,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위치정보·인터넷주소·통신사실확인자료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과 출입·조사 및 관계인 질문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고,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종성인의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5조).

자. 개인위치정보 등의 실종성인 발견 목적 외 이용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26조).

차. 부당목적이나 허위내용의 신고인 등에게 경찰관서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취지 및 검토

1) 제정안의 취지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고 함)은 적용대상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률을 18세 이상 성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¹⁾. 이에 실종성인에 대해서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하여 신고, 접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²⁾,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성인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신고·수색·발견 등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 7. (생략)

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입력 대상 및 정보 관리) ①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아동등

2. 가출인

3.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하 “보호시설 무연고자”라 한다)

③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요구를 한 경우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 : 수배 해제 후로부터 5년간 보관

3. 미발견자 : 소재 발견 시까지 보관

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2) 제정안에 대한 검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종 성인 발생 건수는 2021년 66,259건, 2022년 74,936건, 2023년 74,847건으로 실종아동 등 발생 건수의 약 1.5배에 이르고 매년 1,000여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

<실종성인 및 실종아동등 발생 통계(2021년 ~ 2023년)>

구분	'21년	'22년	'23년
실종 성인(사망)	66,259(1,445)	74,936(1,200)	74,847(1,084)
실종아동 등(사망)	41,122(127)	49,287(134)	48,745(144)

※ 자료: 경찰청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성인 실종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성인실종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소재 파악 수단(개인 위치정보 수집 등)을 활용하거나 소재를 다른 사람에게 통지하는 행위는 본인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실종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한관계·채권채무관계 등에 있는 사람이 실종성인 소재발견·수색 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의 소재를 파악하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위와 같은 우려를 반영하여 실종성인 중 생명·신체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자를 특정 실종성인으로 정의하여 이에 한정하여 개인위치정보등 제공 요청 및 관계장소 출입·조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통한 생명·신체의 보호와 특정 실종성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실종성인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제정안에는 ‘위험도에 따른 발견권한 차등 부여’, ‘실종성인 등록제한 사유’, ‘복귀 절차’ 등 실종성인의 사생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통해 합리적인 실종성인 발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2.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의 제명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아래 표와 같이 총 6장으로 구분된 2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연구	
제5조	실종성인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3장 실종성인의 신고 및 조치	
제7조	신고 접수
제8조	신고에 대한 조치
제9조	실종성인 등록의 제한
제10조	부당신고 및 허위신고의 금지
제4장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제1절 일반적인 실종성인 발견활동	
제11조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제2절 특정 실종성인 발견활동	
제12조	특정 실종성인의 등록
제13조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
제14조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제15조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등
제3절 유전자검사 등	
제16조	유전자검사의 실시

제17조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제18조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제19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제20조	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21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제5장 실종성인 발견 시의 조치	
제22조	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
제23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제24조	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
제25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제6장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과태료
부칙	시행일

3. 조문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생명·신체 및 사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성인”이란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정 안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
나.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
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2) 「군형법」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3)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구조가 필
요한 사람

2. “특정 실종성인”이란 실종성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실종 당시 실종성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
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성인의 생명
· 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
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5.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
보를 말한다.

제정안 제2조는 실종성인의 정의에서 생명·신체의 위험 우려, 소재 확인 필요성을 개념표지로 정하고 있고, 실종성인 중에서도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큰 유형을 ‘특정 실종성인’으로 정의하여 이들에 대한 발견활동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소재 불명의 성인 모두를 수색 등의 대상으로 할 경우 성인의 자기결정권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실종성인과 특정 실종성인을 구분하여 정의하는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은 「실종아동법」상 아동 등, 체포·구속·구인 대상자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은 명시적으로 실종성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영장주의를 고려하여 제정안에 따른 발견수단이 수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³⁾, 재난으로 인한 소재불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 활동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실종아동법」 역시 개인위치정보등 제공요청 시 ‘범죄로 인한 실종아동등’은 제외하도록 규정함.

2) 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3조 및 제4조)

제 정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성인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성인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성인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발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6.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7.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 관련 기술 개발 및 장비의 보급
8. 제16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관련 유전정보의 관리
9. 실종성인의 복귀 절차 및 방법의 마련
10.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 및 복귀 과정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대책
11.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복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종성인의 신고·발견 및 복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정안 제3조는 실종성인 관련 책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한편, 실종성인 관련 정책 등의 시행주체를 경찰청장으로 하고 있음.

실종성인 발견업무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장비 동원 등이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실종성인 관련 책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실종아동법」이 실종아동등 관련 정책 시행주체를 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이원화한 것⁴⁾과 달리 제정안은 경찰청장을 관련 정책 시행의 단일 주체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지원 등 복지업무와의 연관성이 높은 실종아동등과 실종성인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 수행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실종아동법**」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조정한다.

3)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5조)

제 정 안
제2장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연구 제5조(실종성인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성인의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5조는 신속한 실종성인 신고·발견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실종아동법」에서도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발견 체계 구축·운영을 위하여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음⁵⁾.

5) 「실종아동법」 제8조(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

4) 전문연구기관(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경찰청장은 실종성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 수립·추진 및 기술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정 취소와 지원 비용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6조는 실종성인 관련 조사·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구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제공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신고 접수 및 조치(안 제7조 및 제8조)

제 정 안
제3장 실종성인의 신고 및 조치 제7조(신고 접수) ① 경찰관서의 장은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2. 피신고인의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장소 및 경위 3. 피신고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그 밖에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 해당 여부 판단과 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의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주변인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현장 탐문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통해 알게 된 사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이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으로 판단되는

제 정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7조는 경찰관서의 장이 신고인으로부터 피신고인의 발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실종성인 신고가 접수된 것만으로 바로 ‘실종성인’으로 간주하여 발견활동을 개시하는 것은 성인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높으므로, 정보시스템상 실종성인 등록 이전에 실종성인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판단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6) 실종성인 등록 제한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제 정 안

제9조(실종성인 등록의 제한)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신고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피신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신고인을 실종성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신고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피고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에 처하였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정 안

4. 피신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재 확인 내용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신고인이 피신고인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해행위 또는 범죄에 관한 이력이 있는 경우
 6. 다른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사 또는 조세·복지·보건 등 소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당사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실종성인의 등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10조(부당신고 및 허위신고의 금지) 누구든지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성인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 제9조는 부적절한 실종성인 신고의 경우 피신고인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상 실종성인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부당·허위신고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실종성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부적절한 실종성인 신고 사례(예시)>

- ▶ 허위신고(제1호) : 모르는 사람을 지인으로 신고, 정신질환자의 신고(정보기관이 前부인 납치 주장)
- ▶ 부당신고(제2호) : 채권추심 또는 스토킹 목적 등 부당한 목적으로 신고
- ▶ 미복귀 의사 有(제4호) : 당사자가 신고인에게 복귀·연락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신고인이 재신고
- ▶ 신고인 가해·범죄이력 有(제5호) : △가정폭력(범죄) △스토킹행위(범죄) △채권추심법 벌칙 위반 등

7) 실종성인 발견활동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제 정 안
제4장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제1절 일반적인 실종성인 발견활동
제11조(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주거지, 최종 목격된 장소 또는 실종성인이 소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장소에의 탐문 조사
2. 신고인·목격자 또는 실종성인 주변인물의 진술 청취
3. 실종성인의 소재 및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4. 경찰견·드론·헬기 등 발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한 수색
5.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경우

제 정 안

2. 자동차·열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철도·공항·항만 또는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절 특정 실종성인 발견활동

제12조(특정 실종성인의 등록)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특정 실종성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12조의 경우 실종성인이 특정 실종성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반드시 특정 실종성인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8조제3항에서 이미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또는 특정 실종성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안 제13조)

제 정 안

제13조(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 실종성인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 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특정 실종성인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제 정 안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3조는 「실종아동법」 제9조를 상당 부분 준용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특정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실종성인이 아닌

6) 「실종아동법」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수색 또는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파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 실종성인’으로 한정하여 실종성인 중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여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특정실종성인에 대해서만 개인위치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9) 이동경로정보 제공 요청(안 제14조)

제 정 안
제14조(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하여 특정 실종성인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제 정 안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명칭·연락처·주소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에 기재된 의료행위 실시 일시

②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특정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
2.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 발견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④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4조의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은 유사한 입법례에서도 개인의 소재·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긴급을 요하는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해 이동경로정보를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조치로 보임.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제 정 안	재 난 기 본 법	감 염 병 예 방 법
제14조(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생 략)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u>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u>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u>교통카드의 사용명세</u>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u>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u> 4.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u>처방전에 기재된 의료기관의 명칭·연락처·주소</u>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u>진료기록부등에 기재된 의료행위 실시 일시</u>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생 략)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u>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u>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u>교통카드의 사용명세</u>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u>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u>(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u>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u>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u>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u>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① (생 략) 1.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u>처방전</u>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u>진료기록부등</u>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u>출입국관리기록</u>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u>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사용명세</u>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u>교통카드 사용명세</u>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u>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u>

참고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⁷⁾ 안 제14조제3항에서 특정 실종성인 발견을 위하

7)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여 수집된 필요한 정보의 구체적 내용까지 통지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출입·조사 등(안 제15조)

제 정 안
제15조(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출입·조사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특정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출입·조사 또는 질문의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관”은 “공무원”으로 본다.

제정안 제15조는 경찰관서의 장이 특정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1)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제 정 안
제3절 유전자검사 등 제16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견되지 아니한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의 채취를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으로부터 검사대상물의 채취 2. 실종성인이 실종 전에 착용·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소에서의 검사대상물의 채취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신상정보를 그 가족·소유자·점유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성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

제 정 안

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경찰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실종성인의 소재발견을 위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계·검색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6조는 현행 「실종아동법」 제11조⁸⁾를 상당 부분 준용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종성인의 가족이나 실종 전 소지품·거주장소에서 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게 하고, 경찰청장이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제정안 제17조는 안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축한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변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 제16조는 「실종아동법」과 달리 검사 대상물 채취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견되지 아니한 실종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8) 「실종아동법」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1.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
2.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3.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②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17조는 실종성인의 가족 또는 실종 전 소지품·거주장소에서 확보한 유전정보와 비교·분석하여 특정인을 식별·발견할 수 있도록 대조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변사자의 실종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정안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실종자와 변사자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해서도 유전자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2) 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실종아동법	제 정 안
<u>제13조</u>(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할</u>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u>제18조</u>(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u>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도 불구하고 <u>검사대상자, 제16조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자(이하 “검사대상자등”이라 한다)</u>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3호에서 정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u>실종성인을 발견할 때까지</u>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 삭제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및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유전정보의 보존기간 연장,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종성인을 발견하였을 때

2.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3. 유전자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 때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절차·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누구든지 실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제16조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를 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u>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u>	제21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 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u>실종성인과 제16조제3항에 따른 실종성인의 가족이 나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신상정보를 실 종성인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 도로 이용할 수 없다.</u>
--	--

제정안 제18조 내지 제21조는 현행 「실종아동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상당 부분 준용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요건 및 절차, 유전자검사 기록 열람, 신상정보 및 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개인의 민감정보인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오·남용, 불법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 조항은 적절한 내용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18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실종아동법」의 경우 장기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실질적 유일한 단서인 유전정보에 대해 10년의 보관 기한을 삭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종성인의 발견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전정보 보관 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3) 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 및 신고인에 대한 통지(안 제22조 및 제23조)

제 정 안

제5장 실종성인 발견 시의 조치

제22조(실종성인 발견 시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제7조에 따른 피 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 제24조에서 같다)을 발견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실종성인에게 그 실종 신고와 관련한 신고인 및 신고사항 등을 알려야 하며, 해당 실종성인으로부터 그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소재가 확인되거나 발견된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종성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현장출동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요청을 받은 자살예방센터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확인한 때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으로부터 그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동의를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신고인에게 발견·소재 확인의 사실 또는 그 확인한 일시·장소 및 상황 등을 통지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에게 실종성인을 발견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외에 해당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그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정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지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2조는 실종성인 발견 시 실종성인에게 신고사항 등을 알리고 그 가족 또는 신고인으로서의 연락 또는 복귀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발견된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는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종성인 발견 시 경찰관서의 장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 제23조제2항은 실종성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종성인의 소재 또는 그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종성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14) 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안 제24조)

제 정 안
제24조(실종성인 등록 해제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실종성인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사항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 정 안
1. 실종성인이 발견되거나 소재가 확인되어 복귀하는 등 해당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 2. 실종성인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실종성인의 발견활동의 개시 이후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종성인에 대한 발견활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종성인 등록 사항을 해제하는 때에 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실종성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신고인에 대한 소재 등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사 및 관련 사항을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정안 제24조는 실종성인이 발견되는 등 실종성인정보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등에 실종성인 등록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5) 관계기관의 협조 등(안 제25조)

제 정 안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 정 안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제7조에 따른 실종성인에 대한 신고 접수
 3. 제8조에 따른 실종성인 신고에 대한 조치
 4. 제9조에 따른 실종성인 등록 제한 사유의 확인
 5. 제11조에 따른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활동
 6. 제12조에 따른 특정 실종성인의 판단 및 등록
 7. 그 밖에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조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공 및 전산망 이용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⑦ 그 밖에 요구 자료의 범위 및 요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5조는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실종성인의 개인정보 및 기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실종성인 발견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자료(예시)>

- ▶ 신고 접수·조치(제2·3호) : △ 주민등록·가족관계·장애인 등록 자료 △ 유치인/수형자 자료 등
- ▶ 제한사유 확인(제4호) : 가정폭력·스토킹 행위·범죄 이력, 채권추심법 벌칙 위반 이력 등
- ▶ 발견을 위한 활동(제5호) : △ 상용·일용근로자 자료 △ 국민·공무원·사학·장애인 연금 수급 자료 등

16) 벌칙 및 과태료(안 제26조 및 제27조)

제 정 안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정 안

1.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2.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행사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실종성인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 제27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개인위치정보등·이동경로정보의 목적외 이용, 자료요청 거부, 출입·조사 거부·방해, 유전정보·신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시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허위신고, 출입·조사 기피 또는 거짓보고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의무위반 시 제재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이동경로정보에도 CCTV영상, 카드사용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목적외 사용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5